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12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 3 및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112호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추가 운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추가 운영」 공고

1. 개요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관교부지를 추가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일부 지역에 대하여 보관교부지 추가 지정·운영

보관교부지 지정 지역	우편물 교부 장소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536 (수도암)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 (도계암)

부 칙

이 공고는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